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용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용균, 김성준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춘곤, 박영한,  
박철성, 서준오, 성흠제,  
송도호, 아이수루, 유정인,  
, 유정희, 윤종복, 이병도,  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 
임규호, 임만균, 최재란,  
한·신, 홍국표 의원(23  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2015. 7. 30.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,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.
- 이에 따른 조례 적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, 개정규정의 시행(2015. 7. 30.)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15 7. 30.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(서울특별시 조례 제 5981호)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.
- 나. 조례의 시행(2015. 7. 30.)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,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.

#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, 같은 조의 제목으로 “(시행일)” 을 삽입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제5981호, 2015. 7. 30&gt;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제5981호, 2015. 7. 30&gt;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조(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 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 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 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